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59
----------	---------

제출연월일	2019. 3. 18.
제 출 자	보건소장

1. 제안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자치조례가 통합되어 있음을 명확히 함(안 제명, 제1조)

1) 조례 적용대상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와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2) 제명 :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3) 목적 :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정함(제2조)

1)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기준 따른다.

2) 수수료 : 현행) 진료비가 포함된 수수료 규정
 변경) 수수료만 알기 쉽게 규정함

다.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를 정함(제3조)

라. 진료비등의 납부방법을 정함(제4조)

마. 진료비등의 반환 등을 정함(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2. 22.~3. 1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은 자로부터 진료 등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건당 500원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같은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3. 이미 발급된 진단서 등의 재발급: 건당 300원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와 보건진료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진료비(이하 “진료비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응급의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 진료와 예방접종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및 방문 진료
6.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7. 국가, 경상남도 또는 거창군이 개최하는 행사의 의료 지원
8.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9.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1.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12.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13.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4조(진료비등의 납부방법) 진료비등은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 받은 날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제5조(진료비등의 반환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등을 반환해야 한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등을 면제받은 사람에게 그 면제받은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